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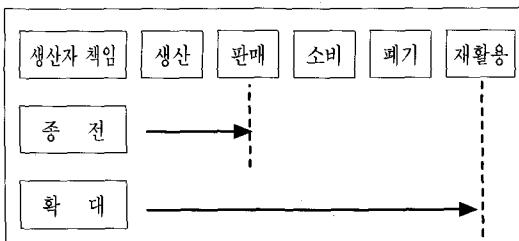
제 도 안 내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

한국윤활유공업협회

1. 제도개요

- 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2)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 3)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 4)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5)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임
- 6)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제도로서
- 7) 2003. 1.1부터 시행
다만,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합니다.

2. 각주체별 역할

소비자 (주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가능자원이 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배출 - 우유팩 등 종이팩과 플라스틱(스티로폼) 받침접시, 용기 등도 '03.1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자치단체 (시군구)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철저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강화 * 신규 분리배출품목인 플라스틱 용기, 접시, 우유팩등도 분리수거 (세부사항 분리수거지침 참조)
생산자	재활용의무를 철저히 이행 (의무 미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정부 (환경부)	법률제개정 및 제도운영 매년 품목별로 재활용의무총량 산정, 부과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자원재생공사등에 대한 지도감독
한국자원 재생공사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접수, 승인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등 제도집행 전반

3.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4대 포장재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

지재질포장재)와 5개 제품(타이어, 유통유, 전지류, 전자제품, 형광등)총 18개 품목

1) 재활용의무 포장재

※ A의 포장재로서 B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것에 한함.

A. 포장재의 종류	B. 포장재의 용도
○ 종이팩	○ 음식료품류
○ 금속캔	-식품공전상의 식품
○ 유리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 가공품·알가공품
○ 수지 재질 포장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 제외)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 살충·살균제(금속캔에 한함)
	○ 전자제품의 완충재(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함)

2) 공통적용기준

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 ① "B"의 내용물을 담거나 보호하거나 싸는 데 사용하여 출고시부터 그 내용물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의 포장재료·용기 일체

② 예시)

유리병(1차)에 담긴 참기름 2병씩을 비닐포장지(2차)로 세트 포장하여 2세트씩을 비닐쇼핑백(3차)에 담아 PP밴딩(4차)하여 출시하는 경우, 1·2·3·4차의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의무대상

나. 재활용 의무대상이 아닌 포장재

- ① 수출용 제품의 포장재
- ② 연구기관·단체의 연구용 제품의 포장재 견본품
- ③ 위 "A"의 포장재이지만, "B"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폐인트통, 농약병, 쓰레기봉투 등
- ④ 위 "B"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고 있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종이박스, 도자기, 목재 등의 포장재
- ⑤ 제품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단지 제품의 운반이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어 공급자가 다시 회수하는 음료수상자, 주류상자 등
- ⑥ 제품의 출고자가 아닌 판매자가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쇼핑백이나 걸포장지

3) 재활용의무대상제품

가. 전자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함)

나. 타이어

다. 유후유

라. 전자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기 포함)

마. 형광등

* 폐기된 제품 자체가 재활용 대상입니다

■ 관계법령

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 라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첨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 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

<p>차 생산물에 한한다)</p> <p>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p> <p>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p> <p>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미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p> <p>바. 부탄가스제품</p> <p>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여,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p> <p>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p> <p>3. 다음 각목의 전지류(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p> <p>가. 수은전지</p> <p>나. 산화운전지</p> <p>다. 니켈·카드뮴전지</p> <p>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p> <p>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p>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p> <p>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p> <p>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p> <p>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p> <p>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p>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p> <p>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p> <p>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p>	<p>의한 건설기계</p> <p>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p> <p>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p> <p>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p> <p>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p> <p>가. 텔레비전</p> <p>나. 냉장고</p> <p>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p> <p>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p> <p>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p> <p>바. 오디오</p> <p>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p> <p>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p> <p>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p> <p>영 [별표 3]</p> <p>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 (제18조제3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계산기 및 전자수첩2.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3. 휴대용 전등4.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5.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를 제외한다)6. 카메라7. 시계8. 어린이용 완구9.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 <p>4. 재활용의무생산자</p> <p>1) 재활용의무대상사업장</p> <p>가. 제 품</p>
--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대상임)

나. 포장재

포장재는 영 별표 4의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
을 운영하는 자

※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제4조 관련) · · < 영 [별표 4] >

업 종	규 모
1.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2.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4. 발포합성수지 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5. 발포합성수지(PSP제외) 재질의 농축 수산물 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 비 고

- 제1호의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경우에는 제조 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브랜드 또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 제2호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가 자기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한 농·축·수산물을 출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제3호에서 "받침접시·용기 등 기타 포장재"라 함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랩, 뚜껑 등으로 단순 포장하여 출고·판매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하며, 제1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

- 업자·수입업자 및 제2호의 농·축·수산물의 판매업자·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제외한다.
- 제5호에서 "농·축·수산물"은 제2호의 자기상표를 부착·표시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그 밖의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 "연간수입액"이라 함은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
- 의무생산자
 - 환경부 장관의 인가
-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공제조합으로 봄
- 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
- 의무생산자를 대신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과 이행결과보고 제출
- 재활용의무 이행
-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
-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운영재원
- 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의 분담금

3)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는자

- 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가전의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춘 자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 마.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 바.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4) 재활용의무방법 및 기준

규칙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별표 4]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제13조관련)

1. 종이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할 것
 -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할 것
 -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 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폴리스티렌(EPS)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할 것
 - 가.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나.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다.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의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

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

프, 플레이크는 세척 품에 한한다)

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7. 전자류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 할 것. 다만, 1차 리튬전지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안전하게 처리 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되, 2005년말까지는 바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의 처리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전자제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할 것

가.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텔레비전(PDP 및 LCD 텔레비전을 제외한다)·개인용컴퓨터는 2005년 말까지는 5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65퍼센트 이상, 냉장고·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말까지는 6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70퍼센트 이상, 세탁기·에어컨디셔너는 2005년 말까지는 7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냉장고는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물질(오존총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고,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는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자는 제7호의 전자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1. 형광등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형광등에 들어있는 수은은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12.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5.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1) 관련법령

영제22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무총량(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 연도 개시 3월전에 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을 고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시 적용한 제품·포장재별총출고량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제22조관련)--〈별표5〉

1.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 + 전년도의 재활용의 무총량)/2 + (전전년도의 총출고량 - 전전년도의 총재활용량)×0.1×재활용여건계수

* 비 고

(1) "재활용여건계수"라 함은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입량, 재활용 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계수로서 계수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로 한다.

(2) "총출고량"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합계를 말하며,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고,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3) "전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년전 연도를 말

하고, "전년도"라 함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 (4)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최초년도의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총재활용"을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총량"으로 본다.
- (5) 제18조제6호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연도의 추정발생량을 "전전년도의 총출고량"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이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총출고량의 90퍼센트(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90퍼센트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총량으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 연도에 재활용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활용의무총량을 감경할 수 있다.

3)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출·고시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재활용하여야 하는 품목별 총량과 전년도의 품목별 출고량 총량을 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 2003년도 윤활유 재활용의무총량
***** 156천 kℓ *****

4) 개별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

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출고량 × 재활용의무총량
제품, 포장재별총출고량(환경부장관고시) × (환경부장관고시)

6. 재활용의무이행절차

1) 제도흐름도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 부과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매년공표 -환경부장관은 분리수거량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연간 재활용의무총량을 고시 ※ 개별사업자는 출고량(수입량), 포장재 사용량을 비례하여 의무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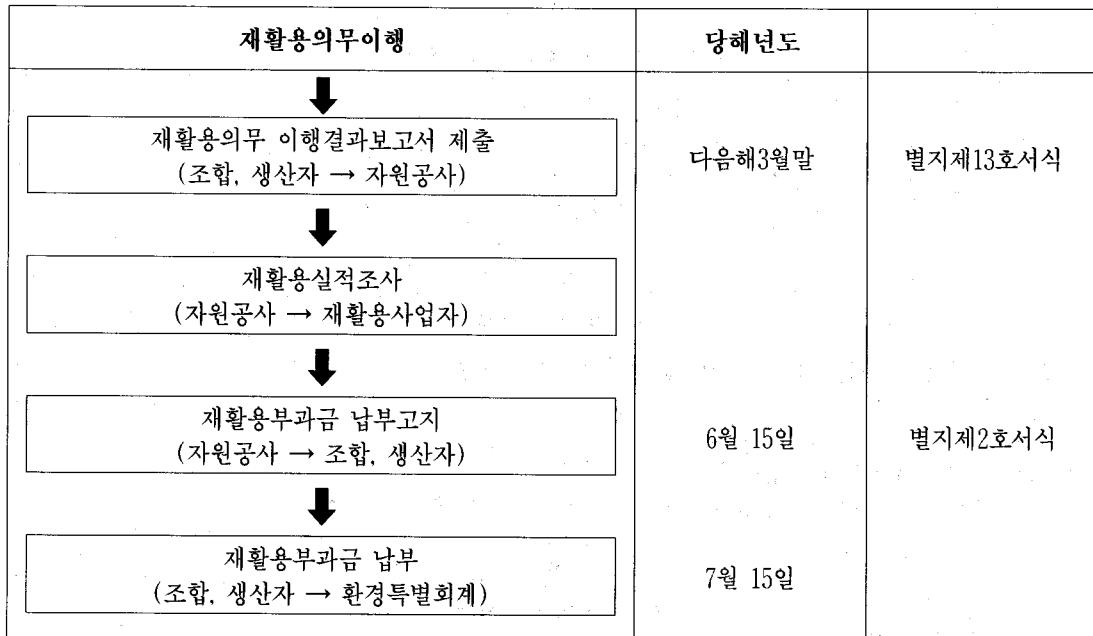
재활용의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아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 ②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 ③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재활용



의무 미이행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년도 종료후 의무미행량에 대해 재활용부과금 징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부과금 = (의무미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가산금 ※가산금은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에 따라 30%까지 차등 적용

2) 업무흐름

재활용의무이행	기 한	비 고
전년도 제품, 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생산자 → 재생공사)	매년3월말	별지제1호서식
↓		
품목별재활용의무총량 고시 (환경부장관)	9월말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조합, 생산자 → 자원공사)	11월말	별지제10호서식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자원공사 → 조합, 생산자)	12월말	별지제12호서식
↓		



3) 장부의 기록 보존

기록 보존할 장부	보존연한	서식
재활용의무생산자	1. 제품포장재의 제조, 수입관리대장 2. 제품포장재의 회수, 관리대장	5년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 받은자	제품, 포장재의 회수, 재활용관리대장	5년 별지 제19호 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품포장재의 회수, 재활용관리대장 (재활용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자의 관리대장 사본)	5년 별지 제19호 서식

* 서류 또는 테이프, 디스크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는 기록, 보존 가능

* 제품, 포장재의 제조, 수입관리대장은 모든 의무생산자

(규모 미만의 생산자포함)가 기록 유지해야 함

7. 재활용부과금산정기준

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나. 기한 : 매년 11월 말까지

다. 제출처 : 자원공사 각 지사에 제출

라. 계획서에 첨부할 사항

- 재활용 시설의 종류 및 용량(위탁시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 시설)
- 제품, 포장재의 회수, 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2)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또는 불승인

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
인 통보

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보관·수정하여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

3)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인요청

4)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가. 대상

나. 재활용의무생산자(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라. 기한 : 다음해 3월말까지

마. 제출처 : 자원공사 각 지사

5) 재활용의무 불이행 및 재활용부과금 산정·부과

가. 출고량 미 제출자

- 확인된 출고량으로 산출한 의무대상량 전량

나.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의무이행 결과 미제출자

- 의무량 전량

다. 의무이행량 미달자

- 의무 미이행량

6) 재활용부과금 산출

(의무미이행량 × 별표6.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 비용산정지수) + 별표7.미이행률별 가산금액

7)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가. 정기부과

- 의무이행연도 다음해 6월15일까지 부과, 7월5일까지 납부

나. 수시부과

- 의무이행연도 경과후 의무 미이행 생산자의 출고량 확인시마다 부과,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8) 납부방법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 은행이나 우체국등 국고 수납대리점에 납부

9) 미납시 조치

가. 납부기한내 미납시

- 가산금 5% 부과하여 납부독촉, 30일내 납부

나. 납부독촉 기한 경과시

-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체납처분

영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재활용 기준비용
1. 음식료품류, 농, 축, 수산물, 세제류, 화장 품류, 의약품류, 부탄 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가. 종이팩 나. 유리병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폴리아크릴릭,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 (ABS) 등 단일 재질의 포장재 (2)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포장재 (3)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포장재 (4)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 복합재질포장재 (5) 합성수지복합재질포장재(PVC복합재질제외)	kg당 185원 kg당 34원 kg당 87원 kg당 151원 kg당 327원 kg당 178원 kg당 317원 kg당 981원 kg당 467원

2. 전자제품 완충재, 능, 수, 축산물 상자	발포합성수지 단일, 복합재질포장재	kg당 317원
3. 전지류	가. 수온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 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g당 39.6원 g당 35.5원 g당 0.78원 g당 0.8원
4. 타이어	타이어	kg당 30원
5. 윤활유	윤활유	l 당 20원
6.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컴퓨터 바. 오디오	kg당 165원 kg당 131원 kg당 122원 kg당 89원 kg당 165원 kg당 194원
7. 형광등	형광등	개당 143원

※ 비 고

-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 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 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 전체 중량으로 한다.
- 제1호의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합성수지재질을 2 이상 복합하여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와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첨합된 경우에 한함)을 첨합, 코팅 등의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포장재를 말한다.
 - 제5호의 경우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에 한한다.

영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관련)

재활용의무량 미이행율(%)	가산금액
5%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수량 × 15/100
5%초과 10%이하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수량 × 20/100
15%초과 30%이하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수량 × 25/100
30% 초과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수량 × 30/100

8. 판매자회수의무

1) 판매업자 회수의무제도란?

법 제21조(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한

다)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